

의안번호	2213916
의 퇴 인	정일영의원
회 답 일	2025. 11. 7.
추계번호	25F58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의8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에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관련 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 - 적용기한: 2028.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의8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지식재산권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는 경우,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됨(안 제25의8)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

※해외출원비용은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을 포함

- (특허비용 납부실적) 최근 5년(2020~2024년)간 중소·중견기업이 납부한 특허비용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비용은 2020년 792억원에서 2024년 88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특허비용 중 중소기업이 지불한 비용이 607억원, 중견기업이 지불한 비용이 294억원 수준

[표 6] 중소·중견기업의 연도별 특허비용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특허비용 납부실적 계	792	888	900	934	882
－ 중소기업	525	569	593	634	607
· 출원료	71	77	78	86	84
· 심사청구료	81	88	85	95	92
· 신규등록료	27	30	28	28	25
· 연차등록료	322	347	373	396	379
· 기타수수료	24	27	29	28	27
－ 중견기업	267	319	307	300	275
· 출원료	27	32	28	32	30
· 심사청구료	43	50	40	42	38
· 신규등록료	16	19	16	16	13
· 연차등록료	175	206	215	210	184
· 기타수수료	7	12	8	1	9

자료: 특허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로 인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해외출원에 대한 기업규모별 관련 비용 자료가 필요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